

2018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법무부 소관)

2019. 4.

대한민정부



## - 목 차 -

(법무부 본부 : 26건)

1. 사법농단 사태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할 것-----1(p)
2. 수사권 조정·공수처 등 관련된 정부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것-----1(p)
3.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하여 검찰의 직접수사조직 및 인력을 과감히 축소하거나 합리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1(p)
4. 故 장자연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에 대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할 것-----1(p)
5. 국제수용자 이송현황의 자료 관리를 강화할 것-----2(p)
6.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 비율, 기소율 현황 등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할 것-----3(p)
7. 아동학대범죄를 줄이기 위하여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수강명령과 치료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는 방안, 아동학대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3(p)
8. 음주운전 및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가석방을 엄격히 관리할 것-----4(p)
9. 경제사범 취업제한과 관련하여 자신이 범죄행위를 저지른 기업에도 취업이 제한되도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을 검토할 것-----4(p)
10. 법무부 내 성희롱 고충처리 시스템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할 것-----4(p)
11. 디지털 증거의 유출은 개인정보의 유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절차가 완료된 경우 신속한 폐기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5(p)
12. 심야조사가 근절되도록 인권보호수사준칙을 개정할 것-----5(p)
13. 쌍용차 해고노동자 사건 및 백남기 사건 관련 손해배상청구의 소취하를 검토할 것-----5(p)

14. 형사부 검사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6(p)
15. 통신자료 제공요청 시 범죄혐의와 상관이 없는 자료들이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방안을 검토할 것-----7(p)
16.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하여 검찰국장을 검찰 출신이 아닌 다른 인사로 보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7(p)
17. 방위사업비리 범죄의 무죄율이 높으므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는 지양할 것-----7(p)
18. 법무부의 여성공무원 비율이 18개 부처 중 가장 낮으므로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방안 등을 검토할 것-----8(p)
19. 퇴직검사 재취업 승인제도를 엄격히 운용하고, 전관예우 방지방안을 검토할 것-----8(p)
20. 법무부에서 독립된 출입국관리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8(p)
21. 법무부에서 독립된 교정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9(p)
22. 일부 구금시설에 과밀수용 문제가 있으므로, 충분한 교정시설을 확보할 것-----9(p)
23. 교정시설 과밀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교정시설에 대체복무시키는 방안, 가석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10(p)
24. 교정시설 수용자의 미성년자 내지 어린이들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확충 방안 등을 검토할 것-----10(p)
25. 교정공무원의 열악한 처우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10(p)
26. 민영소년원의 운영과정에서 부패문제 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11(p)

## (대검찰청 : 14건)

1. 민사불수 제도를 통한 환수 등 범죄수익 환수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12(p)
2. 심신미약을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화·단계화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심신미약 범죄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12(p)
3. 일선 지방검찰청의 형사부 검사를 우대하거나 경향 교류를 확대하는 등의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13(p)
4. 인권보호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인권보호관의 임명방식과 대검찰청 인권부와의 업무중복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13(p)
5. 검사 이의제기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4(p)
6. 검사 및 검찰청 공무원의 외부기관 파견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14(p)
7. 형사보상금 지급규모 축소를 위하여 무죄사건 평정제도 도입 등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고, 무죄선고시 무죄 판결문 게재를 요청하는 제도에 대하여 홍보를 강화할 것-----14(p)
8. 검사 출신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15(p)
9.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심의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15(p)
10. 수사기밀 보호를 위하여 무선도청 탐지대책을 수립할 것-----15(p)
11. 교도소 과밀수용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속수사 관행을 개선하고 기소유예·불기소처분·약식명령 등의 방안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16(p)
12. 고등검찰청의 재수사가 필요한 항고사건을 직접수사하여 처리하는 직접 경정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16(p)
13. 구속영장청구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구속영장청구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16(p)
14. 과거사위원회 및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라 과거 사건의 의혹이 규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검찰이 법적·도의적 책임을 지는 방안을 검토할 것-----17(p)

## (서울고등검찰청 : 7건)

1. 검사가 이의제기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17(p)
2. 법무·검찰 산하 여성 직원에 대한 성범죄를 심각히 받아들이고, 성범죄 근절 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17(p)
3. 신고만으로 검사의 외부기고 및 발표가 가능해져 검찰 조직관리나 신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18(p)
4. 심야수사, 밤샘수사, 피의사실공표 행위를 근절할 것-----19(p)
5. 영상녹화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19(p)
6. 중앙지검에서 일하고 있는 고검, 지검 소속 검사를 원 소속으로 복귀시켜 미제사건수를 줄일 것-----19(p)
7.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관련하여 각급 법원장의 증빙자료 없는 현금 사용 부분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할 것-----19(p)

## (대전고등검찰청 : 9건)

1.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영상녹화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19(p)
2. 스터디그룹 등 검사와 수사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20(p)
3. 피의사실 공표 금지, 심야 수사 금지, 포토라인 금지 등 법무부장관의 지침을 적극 이행할 것-----21(p)
4. 증가하고 있는 미제사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22(p)
5. 과중한 형사부 업무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22(p)
6. 무고전담검사제도와 같이 무고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23(p)
7. 고소·고발사건 집중조사제도를 평가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24(p)
8.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엄정하게 수사할 것-----25(p)
9. 국가배상을 심의함에 있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세밀한 기준을 마련할 것-----26(p)

(광주고등검찰청 : 15건)

1. 선거법 위반사건과 관련하여 공정한 기소권 행사를 위하여 노력할 것-----26(p)
2. 조세법 위반사건과 관련하여 은닉 재산의 환수 방안을 강구할 것-----26(p)
3.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영상녹화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27(p)
4. 전주교도소 이전 시 부지 주변의 민간영역과 충돌하지 않도록 기준부지의 활용, 지역경제 지원 계획 등 대책을 마련할 것-----27(p)
5. 과거사위원회에서 권고한 재조사 사건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할 것-----27(p)
6. 스터디그룹 등 검사와 수사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28(p)
7. 피의사실 공표 금지, 심야 수사 금지, 포토라인 금지 등 법무부장관의 지침을 적극 이행할 것-----28(p)
8. 증가하고 있는 미제사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29(p)
9. 과중한 형사부 업무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29(p)
10. 무고전담검사제도와 같이 무고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30(p)
11. 허위난민에 대하여 인지수사 등 대대적 단속을 시행할 것-----30(p)
12. 다수의 피해자가 예상되는 금융범죄에 대하여 신속히 수사할 것-----30(p)
13. 변호인의 변론권을 보장하고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변론기일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31(p)
14.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엄정하게 수사할 것-----31(p)
15. 국가배상을 심의함에 있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세밀한 기준을 마련할 것 -----32(p)

### (대구고등검찰청 : 6건)

1.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상해사건, 청소년·학생 폭행사건에 대하여 엄정하게 수사할 것 ----- 32(p)
2. 법무·검찰 산하 여성 직원에 대한 성범죄와 검찰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감사 등 사후처리에 내실을 기할 것 ----- 33(p)
3. 노조법 관련 사건을 전문성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는 노동전담부서 신설을 검토할 것----- 33(p)
4. 피의사실 공표 금지, 심야 수사 금지, 포토라인 금지 등 법무부장관의 지침을 적극 이행할 것----- 34(p)
5.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영상녹화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4(p)
6. 중앙지검에서 일하고 있는 고검, 지검 소속 검사를 복귀시켜 미제사건 수를 줄일 것----- 34(p)

### (부산고등검찰청 : 6건)

1.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상해사건, 청소년·학생 폭행사건에 대하여 엄정하게 수사할 것----- 35(p)
2. 법무·검찰 산하 여성 직원에 대한 성범죄와 검찰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감사 등 사후처리에 내실을 기할 것 ----- 35(p)
3. 노조법 관련 사건을 전문성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는 노동전담부서 신설을 검토할 것----- 35(p)
4. 피의사실 공표 금지, 심야 수사 금지, 포토라인 금지 등 법무부장관의 지침을 적극 이행할 것----- 36(p)
5.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영상녹화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7(p)
6. 중앙지검에서 일하고 있는 고검, 지검 소속 검사를 복귀시켜 미제사건 수를 줄일 것----- 37(p)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IOM 이민정책연구원 : 5건)

1.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이기만 하면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5~60%가 이에 해당되므로, 법률서비스 취약계층이 더욱 실효적으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38(p)
2. 변호사에게 지급된 '소송성과급'과 일반직 직군에게 지급된 '성과상여금'의 현저한 차이, 기관장 보직은 소속 변호사만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대한 법률구조공단 직제규칙 등은 직렬 간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 개정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38(p)
3.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청년 변호사들을 모두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에 관하여 다시 검토할 것-----39(p)
4. 정부법무공단의 수임 사건 수는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증가하여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 할 것-----39(p)
5. IOM이민정책연구원은 제주도 무사증 제도가 원래 취지와 달리 난민 신청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는 현안과 관련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국회 상임위에 제출할 것-----40(p)



# 1. 2018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법무부)

구분	시정 · 처리요구사항	시정 ·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법무부 본 부	1. 사법농단 사태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은 사법농단 사태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14명(2명 구속기소, 12명 불구속기소)을 기소하였고 현재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li> </ul>
법무부 본 부	2. 수사권 조정·공수처 등 관련된 정부 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 11. 9. 법무부, 사개특위에 법무부안 제출, '18. 11. 12. 백혜련 의원, 법무부안 기초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 완료</li> <li>○ '17. 10. 15. 공수처 법무부안 발표, '18. 11. 13. 송기현 의원, 법무부안 기초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완료</li> </ul>
법무부 본 부	3.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하여 검찰의 직접 수사조직 및 인력을 과감히 축소하거나 합리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은 지청 특수전담에 이어 창원지검 및 울산지검의 특수부를 폐지하여 직접수사조직을 축소하였고, 2019. 1. 부패수사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li> </ul>
법무부 본 부	4. 故 장자연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에 대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할 것	<p>[故 장자연 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 연장 건의를 받아들여 현재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조사하고 있음</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18. 5. 28.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장자연 리스트 사건 중 '09. 8. 19.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된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 재수사할 것을 권고하여 '18. 6. 26.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을 불구속 기소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 및 심의결과 등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음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li> <li>○ 2019. 4. 1.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 서울동부지검에 구성되어 현재 검사 14명 등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li> </ul>
법무부 본 부	5. 국제수용자 이송현황의 자료 관리를 강화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수형자이송 제도는 이송을 희망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조약이 체결된 국가 간에 이루어지며, 현재 대한민국은 71개국과 조약을 체결하였고, 70개국과 조약이 발효됨 ※ 미발효 국가(국회 비준 필요) : 키르기스스탄</li> <li>○ 법무부는 국제수형자이송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로 해외 공관으로 국제수형이송 제도에 대한 안내문과 동의서를 발송하는 등 노력하고 있음</li> <li>○ 법무부는 이송 희망자 및 이송 완료자 등에 대한 이송현황 자료를 작성·관리하고 있으며 변동사항 발생 시 현행화 하고 있음</li> <li>○ 다만, 해외 수용된 한국인 등에 대한 현황은 법무부가 파악하기 어려운 바, 외교부와 협의하여 해외 수용된 한국인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하여 노력하겠음</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법무부 본 부	6.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 비율, 기소율 현황 등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연령대 DB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통계시스템은 죄명에 따른 사건 처분 현황을 관리하고 있을 뿐,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계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함</li> </ul> </li> <li>○ 다만, 현재는 13세 미만이나 미성년자 대상으로 구분된 죄명들의 합계로 추정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상 추출되는 13세 미만 또는 19세 미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분 현황은 죄명에 13세 미만 또는 미성년자임이 표시되는 죄명의 사건에 대한 처분 현황일 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이더라도 성인과 동일한 죄명으로 처분되는 경우에는 위 통계에 포함되지 아니함</li> </ul> </li> <li>○ 검찰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통계·DB의 구축 방법 및 범위에 대해 다각도로 연구·검토 중에 있음</li> </ul>
법무부 본 부	7. 아동학대범죄를 줄이기 위하여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수강명령과 치료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는 방안, 아동학대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누구든지 신고 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및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에 대해 현장의견 청취 등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여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음</li> <li>○ 외국사례 연구 및 보건복지부·교육부·여성가족부·경찰청 등 아동학대 관련 유관기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추진하겠음.</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법무부 본 부	8. 음주운전 및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가석방을 엄격히 관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명 '윤창호법' 제정 및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하여, 현재 상습 음주운전은 가석방에서 배제하고, 그 외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피해회복 노력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엄정한 심사를 거쳐 가석방을 허가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2018년 11월 정기 가석방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li> </ul> </li> <li>○ 성폭력사범에 대해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 8월 14일 이후 성폭력 사범에 대한 가석방은 없었음</li> </ul>
법무부 본 부	9. 경제사범 취업제한과 관련하여 자신이 범죄 행위를 저지른 기업에도 취업이 제한되도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을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의 범위에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관회의(19.4.25.), 국무회의(19.4.30.) 원안 가결됨</li> </ul> </li> </ul> <p>※ '19.5.7.경 시행령 개정안 공포, 시행 예정</p>
법무부 본 부	10. 법무부 내 성희롱 고충처리 시스템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투(ME-TOO) 문제 근본해결을 위해 법무부 양성평등전담부서를 신설 중에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부 기획조정실 내 신설하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을 중심으로 법무부 내 성희롱 고충처리 시스템을 정비하겠음</li> </ul> </li> </ul> <p>※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규칙 개정 예정</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효성 있고 지속적인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개선 노력 중임</li> <li>- 법무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을 전부개정 중에 있음</li> </ul> <p>* 2차 피해 방지, 피해자 보호제도 정비,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기관장 책무 강화 등 보완</p>
법무부 본 부	11. 디지털 증거의 유출은 개인정보의 유출과 직결 되기 때문에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절차가 완료된 경우 신속한 폐기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중 디지털 증거 폐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임</li> </ul>
법무부 본 부	12. 심야조사가 근절되도록 인권보호수사준칙을 개정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에서 다양한 심야조사 최소화 방안을 시범실시하고 있고 심야 조사에 대한 실태조사도 하고 있음</li> <li>○ 금년 상반기 내로 시범실시, 실태 조사 결과 및 해외 사례 등을 종합하여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 건의 검토 등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li> </ul>
법무부 본 부	13. 쌍용차 해고노동자 사건 및 백남기 사건 관련 손해배상청구의 소취하를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적으로 소취하 여부 등 구체적인 소송수행 방안은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경찰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으로 생각됨</li> <li>- 계속 중인 사건 중 일부는 법무부가 직접 수행청을 지휘할 수 없는 소가 (訴價) 10억 원 미만인 사건이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음</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가(訴價) 10억 원 이상인 사건의 경우 절차상 경찰이 지휘청에 소취하 등의 지휘건의를 하면, 지휘청·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가 법리적 타당성 등을 따져 승인여부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되므로, 이 과정에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음</li> <li>○ 참고로, 법무부는 '전략적 봉쇄소송'에 대한 해법 모색을 위해 이를 제한하는 취지의 정부 입법안을 추진하고 있고 '19. 3. 25. 한국민사소송법학회에 관련 연구용역 계약을 발주하였으며, 현재 계속 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전략적 봉쇄소송'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충분히 검토 예정임 ※ 용역 명 : '전략적 봉쇄소송에 관한 입법적 검토', 계약기간 : '19. 3. 25. ~ '19. 6. 30.</li> </ul>
법무부 본 부	14. 형사부 검사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1개 지청의 특수 전담을 폐지하고, 울산 및 창원지검 특수부를 형사부로 변경하였으며, 수사과의 인지 수사 업무를 주요 고소 사건 수사로 변경하는 등 형사부 업무활동 강화 방안을 수립·시행 중임</li> <li>○ 집중·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당사자가 대면하여 공방하는 '법정형 조사실' 활용 사건처리절차 도입, 서술식 조서와 녹음·녹화 등 간이한 조사방법을 활용하는 '합리적 조사 방법 선택을 위한 매뉴얼' 배포 등 형사부 업무 효율화 방안을 검토·추진 중임</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법무부 본 부	15. 통신자료 제공요청 시 범죄혐의와 상관이 없는 자료들이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방안을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신자료 제공요청 건수는 2014년도부터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검찰은 필요한 사건에 한하여 신중히 통신자료를 요청하고 있음</li> <li>○ 앞으로도 통신자료 제공요청 시 범죄혐의와 상관이 없는 자료들이 제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li> </ul>
법무부 본 부	16.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하여 검찰국장을 검찰 출신이 아닌 다른 인사로 보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하여 '17년 하반기부터 총 35개 직위에 외부전문가 및 내부 우수공무원을 임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국·본부장 4개 직위, 국·과장급 10개 직위, 평검사 21개 직위</li> </ul> </li> <li>○ 검사만 보임하던 검찰국 과장 2개 직위를 복수직제화하여 검찰국 탈검찰화의 토대 마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형사과, 형사법제과 복수직제화('18. 12.)</li> </ul> </li> <li>○ 향후, 그 외 검사가 보임된 직위에 대해서도 외부전문가 등 우수 인재 영입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부 탈검찰화의 취지를 살리면서 전문성과 정책추진의 연속성이 확보되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무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li> </ul> </li> </ul>
법무부 본 부	17. 방위사업비리 범죄의 무죄율이 높으므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는 지양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위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수사역량을 계속 제고해 나가고, 비리의 원인과 구조적·제도적 문제점을 관계기관과 공유하면서 근본적인 제도개선책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법무부 본 부	18. 법무부의 여성공무원 비율이 18개 부처 중 가장 낮으므로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부는 인사혁신처가 각 부처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한 「정부 균형 인사시행계획」 상의 우리 부 연도별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나, 정부 전체의 평균에는 미흡한 실적이므로 앞으로 여성관리자 비율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년 목표 및 실적('19. 4. 15.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위공무원(대검포함)</li> <li>· 목표 : 4.5%, 실적 : 4.8%</li> <li>- 본부과장급</li> <li>· 목표 : 11.4%, 실적 : 11.8%</li> </ul> </li> </ul> </li> <li>○ 향후에도 목표치의 초과 달성을 및 여성관리자 비율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li> </ul>
법무부 본 부	19. 퇴직검사 재취업 승인 제도를 엄격히 운용하고, 전관예우 방지 방안을 검토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취업 승인 신청에 대해 업무 관련성,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그에 대한 의견서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음</li> <li>○ 퇴직 검사들에 대한 재취업 심사가 실질적이고 엄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li> </ul>
법무부 본 부	20. 법무부에서 독립된 출입국관리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국관리청 등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는 문제는 국가의 정책 방향, 국민 여론, 부처 간 기능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사료됨</li> <li>○ 출입국자가 연 9천만여 명에 육박하고, 상시 체류외국인이 대구시 인구와 비슷한 237만여 명에 이르는 상황인 바, 향후 외국인정책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을 내실화하고,</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관계 부처와의 협업 등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외국인정책과 행정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 검토해 나가겠음
법무부 본부	21. 법무부에서 독립된 교정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정행정 분야의 전문성·특수성을 감안할 때 교정청 독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li> <li>○ 주요 현안인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교정공무원 인력 충원 등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 등에 역량을 우선 집중하고,</li> <li>○ 교정청 신설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추진을 검토하겠음</li> </ul>
법무부 본부	22. 일부 구금시설에 과밀 수용 문제가 있으므로 충분한 교정시설 확보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신·증축 및 리모델링 등 교정시설 확충에 지속 노력 중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정시설 이전, 신축사업 지속적으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 신축 중인 기관: 대구·전주·원주·창원(교)</li> <li>• 현재 신축 중인 기관: 속초(교), 거창(구)</li> <li>• 시급히 신축이 필요한 기관: 경기 북부·광주·대전(구), 화성여자(교)</li> </ul> </li> <li>- 교정시설 리모델링, 증축을 우선적으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20. 인천구 등 15개 기관</li> <li>• '20.~'21. 진주교 등 10개 기관</li> </ul> </li> </ul> </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법무부 본 부	23. 교정시설 과밀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교정 시설에 대체복무시키는 방안, 가석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로 수용밀도가 높은 대도시 교정 시설에 대체복무요원을 배치하여 운영지원작업에 활용함으로써 수용 공간을 확보하고 기존 수용자는 지방교정시설로 분산 이송시키는 방안을 마련 중임</li> <li>○ 또한 재범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하고, 취업조건부 가석방 등을 활용하여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 하겠음</li> </ul>
법무부 본 부	24. 교정시설 수용자의 미성년자 내지 어린 이들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확충 방안 등을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증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년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예산 3억을 확보, 서울동부구치소 등 9개 교정시설에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을 증설 할 예정이고, 향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전국 교정시설에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을 구축할 계획임</li> </ul> </li> <li>※ 2019년 4월 현재 전국 15개 기관 아동 친화형 가족접견실 구축</li> </ul>
법무부 본 부	25. 교정공무원의 열악한 처우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 2월 야간 교대근무 개선을 위해 67명을 충원하였으며,</li> <li>○ 부족한 야간 교대근무 인력 충원을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교정공무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음</li> </ul> <p>※ '20년 야간 교대근무 인력 220명 행안부 요청</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법무부 본 부	26. 민영소년원의 운영 과정에서 부패문제 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	<p>○ 민영소년원 관련, 영리화에 따른 우려 해소, 국가의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및 부실운영 방지 등 민영소년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민영소년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수정의견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음(정부안, '18. 11. 12. 1소위 회부)</p> <p>※ 법률안 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보호법인의 정의규정을 수정하여 비영리법인으로 함으로써 영리추구에 따른 부패 우려 원천 차단</li> <li>- 법인 임원 전체의 취임 승인 및 취소에 대한 법무 부장관의 권한 명시</li> <li>- 위탁업무를 처리하면서 법령이나 지시에 위반하면 업무를 정지하고, 부실경영 등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 계약 해지</li> <li>- 결산보고 시 독립된 회계법인 등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급받은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li> <li>-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li> </ul>

## 2. 2018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 대한 처리결과(대검찰청 : 고등검찰청 포함)

구분	시정 · 처리요구사항	시정 ·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검찰청	1. 민사몰수 제도를 통한 환수 등 범죄수익 환수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현재 범죄수익환수 전문검사 T/F를 통해 민사몰수제도 입법 방식, 적용대상, 적용 사유 등에 대해 연구 중에 있음</li><li>○ 또한, 환수 관련 법제 개선, 업무 시스템 개편, 교육 강화 등을 통해 환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li></ul>
대검찰청	2. 심신미약을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화·단계화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심신미약 범죄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심신장애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심신장애 판단이 가능하도록 절차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수사단계에서 심신장애 여부를 신속히 판정하기 위해 감정유치 청구 전 사전절차 도입방안 검토 중 - 외부기관에 해외입법례 조사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여('19. 4.)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 예정</li><li>○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치료감호를 적극 청구하고, 경미범죄자에 대해서도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법무부 치료처우과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관련제도 개선방안 검토 예정</li></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검찰청	3. 일선 지방검찰청의 형사부 검사를 우대하거나 경향 교류를 확대하는 등의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부는 2018. 12. 경향교류 강화, 부장검사 보임 시 형사부 근무요건 강화, 기회균등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일반검사 인사시기 명문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검사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2019. 2. 일반검사 인사부터 적용하였음</li> </ul> <p>※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 및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 예규)을 제정, 시행(2018. 12.)</p>
대검찰청	4. 인권보호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인권보호관의 임명방식과 대검찰청 인권부와의 업무 중복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 제67조에 따라 대검찰청에는 인권부장,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 및 차치지청에는 차장검사, 그 이외 지청에는 지청장이 각 인권보호관으로 지정되어 있음</li> <li>○ 인권보호관은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와 적법절차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그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부장검사 이상의 고호봉 검사를 인권보호 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인권보호관의 직무를 보좌하도록 하고 있음</li> <li>○ 또한, 2018. 7. 신설된 대검 인권부에서는 인권보호담당관의 업무만 전담하는 인권감독관을 전국 12개 지검에 배치하였는바, 향후 인권감독관의 인권보호 업무를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할 계획임</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검찰청	5. 검사 이의제기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소통 활성화 및 의사결정 합리화 TF」를 구성·운영함('18.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의제기 절차 개선방안 검토, 검찰미래위원회 안건 상정('19. 4.)</li> <li>* 이의제기 및 관련 보고절차 간소화 등</li> </ul> </li> <li>○ 일선 청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li> </ul>
대검찰청	6. 검사 및 검찰청공무원의 외부기관 파견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인원은 2017. 5. 64명(40개 기관)에서 2019. 3. 현재 60명(37개 기관)으로 지속적으로 감축해 가고 있음</li> <li>○ 검사 및 검찰청 공무원의 외부기관 파견 시 검찰 업무와의 구체적 관련성, 전문성, 파견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외부 기관에 불필요하거나 부적정하게 파견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음</li> </ul>
대검찰청	7. 형사보상금 지급규모 축소를 위하여 무죄 사건 평정제도 도입 등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고, 무죄선고시 무죄 판결문 게재를 요청하는 제도에 대하여 홍보를 강화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시행중인 무죄사건 평정제도 운용 관련, 결재자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보다 엄격한 평정제도 마련을 통해 사건처리의 완결성을 높이도록 하겠음</li> <li>○ 무죄 확정 시 당사자가 신속히 판결문 게재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우편 안내를 시행중이며, 아울러 각급 검찰청 민원실에도 관련 안내문을 비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음</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검찰청	8. 검사 출신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론 투명화·실질화 TF」를 구성·운영함('18.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평한 변론기회 보장 및 변론 절차의 투명성 제고 방안 검토</li> </ul> </li> <li>○ 일선 청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li> </ul>
대검찰청	9.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심의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은 국민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 이목이 집중된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li> <li>○ 공정하고 자율적인 심의를 위해 심의과정은 비공개로 하되 심의 의견의 공개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하고 있음</li> <li>○ 심의내용이 일률적으로 공개될 경우 위원회 심의가 위축되거나 공정성·자율성이 저해될 우려도 있음</li> <li>○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여 향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li> </ul>
대검찰청	10. 수사기밀 보호를 위하여 무선도청 탐지대책을 수립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 지침'에 따라 기관장실 등에 무선 도청 방어 장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임</li> <li>○ 불법적인 무선도청으로 수사기밀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검찰청	11. 교도소 과밀수용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속 수사 관행을 개선하고 기소유예·불기소처분·약식명령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은 2006년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였으며,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불구속 수사 원칙이 명문화되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10년간 구속인원은 2018년 24,438명으로 2009년의 42,727명 대비 42.8% 감소하였음</li> </ul> </li> <li>○ 앞으로도 불구속 수사 원칙이 준수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li> </ul>
대검찰청	12. 고등검찰청의 재수사가 필요한 항고 사건을 직접 수사하여 처리하는 직접 경정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은 항고사건을 경륜과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로 하여금 수사, 처분하도록 하는 ‘복심화’ 제도를 운영하여, 원칙적으로 항고사건은 고검에서 직접경정토록 하고 있음</li> <li>○ 다만, 현재 고검의 인력상황으로는 재기가 필요한 모든 항고사건을 직접 처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사안이 중대하거나 고난도인 재기 수사명령 사건은 경륜과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로 구성된 중요경제범죄 조사단이 처리토록 하고, 향후에도 고검 또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의 항고사건 처리 비율을 늘려가도록 할 계획임</li> </ul>
대검찰청	13. 구속영장청구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구속영장청구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구속영장청구기준, 구형기준 등 검찰사건처리기준 전반에 대한 검토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기준을 국민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 역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검찰청	14. 과거사위원회 및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라 과거 사건의 의혹이 규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검찰이 법적·도의적 책임을 지는 방안을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 검찰총장 사과 및 비상상고 신청('18. 11.)</li> <li>○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관련 검찰총장 유족 방문 및 사과('18. 3.)</li> <li>○ 장자연 사건 중 강제추행 재수사 권고 관련 재수사, 불구속 기소, 공소유지 중('18. 6.~)</li> <li>○ 남산 3억원 사건 주요 위증 혐의 수사권고 포함 수사촉구권고 관련 수사 중('19. 1.~)</li> <li>○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수사권고 관련 수사 중('19. 3.~)</li> <li>○ 향후 과거사위원회로부터 조사결과 발표가 되면 그 내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음</li> </ul>
서울고검 서울중앙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서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1. 검사가 이의제기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 법무·검찰 산하 여성 직원에 대한 성범죄를 심각히 받아들이고, 성 범죄 근절 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검 「의사소통 활성화 및 의사결정 합리화 TF」를 구성('18. 9.), 이의 제기 절차 개선안을 마련하여 검찰 미래위원회에 안건 상정하였고('19. 4.), 향후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지침 정비 등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임</li> <li>○ 향후 대검의 검사 이의제기 활성화 방안 마련 시 적극 시행 예정임(서울고검)</li> <li>○ 성범죄 및 성범죄로 발전하기 쉬운 성차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 고등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 행위 예방 및 처리지침」을 제정·시행('19. 3.)하고, 이에 따라 양성 평등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성범죄 발생 시 피해자 철저 보호 및 가해자 엄중 조치 예정임(서울 고검)</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서울고검 서울중앙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범죄·성차별예방을 위한 2019년 교육 계획을 수립('19. 3.)하고, 향후 전문강사 초빙 교육 등 관련 교육을 적극 실시할 예정임(서울고검)</li> </ul>
서울서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3. 신고만으로 검사의 외부기고 및 발표가 가능해져 검찰 조직 관리나 신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는 외부 기고·발표시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정확하게 알리고, 관련자의 명예 또는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게 주의'하여야 하며, '직무상 파악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윤리강령 제21조(외부 기고 및 발표에 관한 원칙), 제22조(직무상 비밀유지), 검사 윤리강령운영지침 제13조(외부기고 및 발표시 주의사항)</li> </ul> </li> <li>○ 또한 수사사건 관련 사항의 공개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 비밀유지 의무,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등의 관점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우선 적용하여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윤리강령 제21조(외부 기고 및 발표에 관한 원칙) 단서</li> </ul> </li> <li>○ 외부 기고·발표 신고가 접수되면 위와 같은 주의 사항을 사전에 주지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정하게 감찰을 실시할 예정임(서울고검)</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서울고검 서울중앙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서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4. 심야수사, 밤샘수사, 피의사실공표 행위를 근절할 것	○ 심야조사 등은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수사 절차에 있어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서울중앙지검)
	5. 영상녹화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 영상녹화 등을 활용한 효율적 조사 기법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영상 녹화조사의 적극 활용을 독려 하고 있음(서울중앙지검)
	6. 중앙지검에서 일하고 있는 고검, 지검 소속 검사를 복귀시켜 미제 사건 수를 줄일 것	○ 2019년 상반기 검사 인사를 통해 파견검사 15명을 감축하였으며, 민생사건 담당부서를 강화하여 적정한 사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서울중앙지검)
	7.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관련하여 각급 법원 장의 증빙자료 없는 현금 사용 부분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할 것	○ 최종 책임자인 양승태 前 대법원장 등 3명을 국고손실죄로 기소하였음 (서울중앙지검)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1.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영상녹화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검은 일선 청에서 이미 조사를 마친 항고사건에 대하여 재검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동안 영상녹화제도를 적극 활용하지 않았으나, 향후 고검의 직접 수사 기능을 확대하고 영상녹화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음(대전고검)</li> <li>○ 사건 당사자들에게 영상녹화조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영상 녹화시 속기나 서술형 조서를 이용</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p>하는 등 영상녹화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대전지검)</p> <p>※ 대전지검의 '18. 10.~'19. 3.까지의 수사검사 1인당 영상녹화 수는 16.97명으로 전국평균 10.69명보다 높고 전년 동기 대비 73.9%(9.76명) 증가하는 등 적극적으로 영상녹화제도를 활용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상녹화제도의 유용성을 구성원들에게 수시로 알려 영상녹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상급기관 차원의 교육·홍보에도 적극 참여하고, 관련 지침을 숙지하는 등 적정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중임(청주지검)</li> </ul> <p>※ 4. 2. 대검 과학수사부 담당과장 영상녹화 제도 활용방안 직접 교육</p>
	2. 스터디그룹 등 검사와 수사관의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전담별 정기적인 법무연수원 교육, 수사 방법 등을 공유하는 화상회의, 워크숍, 검사회의 등을 통해 검사와 수사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대전고검)</li> <li>○ 검사와 수사관이 전담별 스터디그룹을 조직하여 수사사례를 연구하고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대전지검)</li> </ul> <p>※ 지식재산권 연구회('16. 3.), 조세범죄 실무 연구회('19. 1.), 강력범죄 실무연구회('19. 4.)를 조직하여 활발히 활동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 8.부터 실시중인 고소·고발 사건 처리 개선방안과 연계하여,</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p>검사와 검찰수사관 사이의 수사 노하우 공유 등 교류를 강화하고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사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특히 관계자 간담회시 특정 주제를 정하고 이에 대한 법리상 쟁점이나 수사기법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역량 강화 방안이 내실 있게 실행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청주지검)</p>
	<p>3. 피의사실 공표 금지, 심야 수사 금지, 포토 라인 금지 등 법무부 장관의 지침을 적극 이행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제32조에 의거, 준칙을 위배한 경우 공개경위, 내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 법령과 준칙에 위반하여 피의사실이 외부에 유출되거나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산하청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있음(대전고검)</li> <li>○ 인권보호수사준칙 및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준칙을 위반한 피의사실 공표, 수사진행 상황에 대한 과잉공보 행위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대전지검)</li> <li>○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의 예외적 수사 내용 공개사유를 엄격히 해석하여 중대한 추측성 보도 방지나 공개 관련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경우에만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사내용을 공개하고 있음(청주지검)</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p>4. 증가하고 있는 미제 사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소·고발 사건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인사이동과 파견 등에 따른 인력 부족사유로 미제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에 향후 소속 검사와 수사관 인력 충원에 보다 노력하여, 사건의 실질적 심사와 신속, 적정한 처리를 통해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대전고검)</li> <li>○ 경륜이 있는 부부장검사, 경력 검사들을 형사부에 배치하여 복잡한 주요 사건을 처리하게 하는 등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대전지검)</li> <li>○ 각종 사회현안사건 수사 과정, 국외훈련, 출산휴가 등으로 검사 인력 부족이 일시적으로 심화된 사실이 있었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민생사건 수사 인력을 충원하고 고소·고발사건 수사절차 개선·효율화를 도모할 예정임(청주지검)</li> </ul>
	<p>5. 과중한 형사부 업무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소사건 처리절차의 개선, 검사 직무대리 제도 확대실시, 항고 사건의 고등검찰청 직접경정 확대 등으로 형사부 검사 업무를 합리적으로 분담하고, 인지부담 및 부수 업무 등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며, 3개월 초과 미제사건 산정방식 개선 등 형사부 업무 합리화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대전고검)</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상녹화, 서술형조서 활용 등 조사절차를 효율화하고, 조사과의 수사관 인력을 활용하여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등 형사부의 과중한 업무량을 경감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대전지검)</li> <li>○ 영상녹화, 서술형 요약 조서 작성 등 조사 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고소·고발 사건 수사절차를 개선하여 수사과의 수사 담당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고소·고발 사건을 초기부터 내실 있게 수사하여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다수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복잡한 경제사건의 경우 신설된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을 적극 활용 중임(청주지검)</li> </ul> <p>* '18. 7. 19. 청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신설, 지역주택조합 재건축 관련 사건 등 지역내 대규모 분쟁 사건 집중수사</p>
	6. 무고전담검사제도와 같이 무고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검의 경우 항고사건 수사를 통한 무고 인지가 대부분임. 무고죄는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해 사법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중대한 범죄인 바, 무고죄의 처벌·구형·구속기준을 엄중하게 정비하여 무고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대전고검)</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주지검의 사례를 참고하여 수사지휘 단계부터 무고 여부를 철저하게 검토하는 등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대전지검)</li> <li>○ 무고는 그 무고의 내용이 된 범죄의 경중과 성질에 따라 취급을 달리 해야 할 필요가 있어 유형이 다양하므로 각각의 전담범죄별로 관련 고소의 무고 판단을 하는 것에 장점이 있으나, 통상적인 송치 무고 사건은 엄정하고 통일적인 처리를 도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무고죄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약식 기소를 지양하고 그 무고 내용에 따라 양형기준 내에서 엄한 형을 구형하도록 하고 있음(청주지검)</li> </ul>
	7. 고소·고발사건 집중 조사제도를 평가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주지검에서 시행한 고소·고발 사건 집중조사제도 결과 분석을 통해 전국 또는 대전고검 산하청에 확대 시행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대검찰청에 건의하여 전국 확대 시행에 노력하겠습니다(대전고검)</li> <li>○ 타청에서의 제도 시행 경과를 살펴보고, 대검찰청과 협의하여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대전지검)</li> <li>○ 2018. 3. 12.부터 고소·고발 사건 집중조사 제도 실시중이며, 수사 절차에 투명성을 높여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등 당사자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바, 시행 성과를 지속적</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으로 모니터링하여 제도의 장·단점과 보완가능성을 심도 있게 검토 후 전국 확대시행 건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청주지검)
	8.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엄정하게 수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로부터 미성년자와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대처하고,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전자발찌 부착, 신상공개, 화학적 거세 등 현행법상 규정된 다양한 방안을 활용하여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성범죄자에 대한 정신적인 치료도 병행하도록 하겠음(대전고검)</li> <li>○ 미성년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를 엄정히 수사하고, 죄질이 중한 성범죄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하는 등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 하겠음(대전지검)</li> <li>○ 성폭력 및 장애인 조사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전담검사가 초동 수사 지휘부터 공소유지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수사 과정에서는 전문인력을 신뢰관계인으로 동석시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고,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되면 원칙적으로 항소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실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청주지검)</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9. 국가배상을 심의함에 있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세밀한 기준을 마련할 것	○ 우리 청은 국가배상 신청의 인용 여부나 과실비율을 판단할 때 신청인의 연령 및 장애유무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심의기준을 개정하였으며, 향후 기준을 더욱 세분화하여 유아, 임산부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사정을 종합적·다각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심의를 통해 국민의 피해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대전고검)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1. 선거법 위반사건과 관련하여 공정한 기소권 행사를 위하여 노력할 것	<p>○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범죄 혐의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광주지검)</p> <p>※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관련, 금품사건은 사안이 중한 경우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음</p>
	2. 조세법 위반사건과 관련하여 은닉 재산의 환수 방안을 강구할 것	<p>○ 2017. 9.부터 범죄수익환수 실적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고, 조세범을 포함한 환수대상범죄 관련 은닉 재산 환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광주지검)</p> <p>※ 혀재호 前 대주그룹 회장 조세법위반 사건에서는 기소 전 포탈세액 508억 원 전액 완납, 기소 후 가산세 등 228억 원 및 횡령 피해액 100억 원 전액 변제공탁하여 미납 추징금 내지 벌금 없음</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3.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영상녹화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 「영상녹화조사 활성화 방안」 시행, 2019. 3. 「영상녹화조사 실태 점검 및 내실 있는 활용 방안」 마련 등 수사과정 투명성 확보 및 인권보장에 장점이 있는 영상 녹화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임(광주고검)</li> <li>○ 상급기관 차원의 교육·홍보를 통해 검사 및 수사관들이 영상녹화조사를 적극 활용하고, 관련 지침을 숙지하여 적정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광주지검)</li> </ul> <p>* 4. 4. 대검 법과학분석과장이 당첨에서 줄검사 및 수사관 대상으로 영상녹화 활용방안 교육</p>
	4. 전주교도소 이전 시 부지 주변의 민간영역과 충돌하지 않도록 기존 부지의 활용, 지역경제 지원 계획 등 대책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주교도소 현 부지는 신축 이전 후 총괄 청(기획재정부)으로 인계 될 예정으로, 소관은 아니지만 지역민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상급 기관인 광주고검에 현황을 보고하였고, 소관 기관에 적극 협조 예정임(전주지검)</li> </ul>
	5. 과거사위원회에서 권고한 재조사 사건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재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찰의 항소제기로 피고인들에게 미칠 또 다른 고통을 참작해 항소하지 아니하였음(전주지검)</li> <li>○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있고, 담당 법무관이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하도록 조치하여 적정한 소송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전주지검)</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6. 스터디그룹 등 검사와 수사관의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 8.부터 실시중인 고소·고발 사건 처리 개선방안과 연계하여, 검사와 검찰수사관 사이의 수사 노하우 공유 등 교류를 강화하고 있음(광주지검)</li> <li>○ 2018. 8.부터 무죄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는 선고 직후 신속히 무죄 원인을 분석, 즉시 전 검사들에게 전파하여 유사 사례를 방지하는 등 역량강화에 힘쓰고 있음(광주지검)</li> <li>○ 2018. 8.부터 8·9급 수사관을 대상으로 수사 및 검사실 근무 경험을 통한 수사업무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수사관실무교육 (On-the-job training)을 실시하고 있음(전주지검)</li> <li>○ 2014. 3.부터 매월 1부·1과 결연을 통해 상호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부·과별 검찰실무와 관련된 주제를 선정 후 해당 부·과 전원이 참석하여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하는 검찰실무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음(전주지검)</li> <li>○ 2015. 7.부터 매월 8·9급 수사관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수사관 연구 모임을 운영 중임(전주지검)</li> </ul>
	7. 피의사실 공표 금지, 심야 수사 금지, 포토 라인 금지 등 법무부 장관의 지침을 적극 이행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보호수사준칙,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위 준칙에 위반한 피의사실 공표, 수사진행 상황에 대한 과잉공보 행위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광주지검)</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주지검은 피의사실 공표, 포토라인 세우기, 심야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음(전주지검)</li> </ul> <p>※ 2018. 12. 19.자 중앙일보 「전주지검의 실험... '8년 도피' 최규호 형제 잡고도 포토라인 안 세운 이유」, 2019. 1. 17.자 조선일보 「현직 검사장까지 "포토라인 폐해 너무 많다"」</p>
	8. 증가하고 있는 미제 사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 1.부터 장기미제에 대해 「부장·차장검사 기록검토 방안」을 시행하는 등 미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음(광주지검)</li> <li>○ 2018. 12. 심충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공안·특수·강력부 및 수사·조사과에 재배당하는 등 업무 적정 분담을 통해 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광주지검)</li> </ul> <p>※ '19. 3.말 기준 전년동기 대비 장기사건 40건 감소</p>
	9. 과중한 형사부 업무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상녹화, 시술형 요약 조서 작성 등 조사 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 조사자뿐만 아니라 피조사자의 시간 소비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중임(광주지검)</li> <li>○ 자체적으로 고소·고발사건 수사 절차를 개선하고, 수사과의 수사 담당인력을 충원하여 고소·고발 사건을 초기부터 내실 있고 신속하게 수사하는 방안을 시행 중임</li> <li>○ 다수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복잡한 경제 사건의 경우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서 적극 수사 중임(광주지검)</li> <li>○ 2018. 12. 및 2019. 3. 일부 형사 사건을 인지부서(공안·특수·강력부)에 재배당하여 형사부 업무를 경감하였음(광주지검)</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10. 무고전담검사제도와 같이 무고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 하반기부터 수사지휘 담당 검사를 무고 전담 검사로 지정하여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무고사범을 단속하고 있음(광주지검)</li> <li>○ 2018. 11.부터 「무고 사건 기소율 제고방안」을 시행하고 있음(광주 지검)</li> </ul>
	11. 허위 난민에 대한 인지수사 등 대대적 단속을 시행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 9. 공문서위조사범 수사 과정 에서 중국인 11명에 대한 허위 난민 신청 알선 사실 밝혀내 구속 기소 하였고 2019. 2. 15. 유죄 확정됨 (제주지검)</li> <li>○ 향후에도 허위 난민 관련 수사 단서 포착 시 적극 수사 진행 예정임</li> </ul>
	12. 다수의 피해자가 예상되는 금융범죄에 대하여 신속히 수사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 3. 서민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양산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청 내 ‘서민다중 피해범죄 수사 T/F팀’을 구성하였음(광주 지검)</li> <li>○ 수사팀 회의를 통해 유사·관련 사건의 수사사례 및 판례 등 정보를 공유하고, 범죄수익환수 등 실질적 대책을 논의하였음(광주지검)</li> </ul> <p>※ '18. 12. (주)필립에셋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 관련 7명 구속기소, 5명 불구속기소 등 엄단, 현재까지 399억 원 추징보정, 관련 추가 피해 수사 중</p> <p>※ '19. 3. FX마진거래 다중피해 사기범 직구속 등 다수피해자를 양산한 금융범죄 엄단 중</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13. 변호인의 변론권을 보장하고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변론기일 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별로 특정요일을 ‘변론기일’로 지정하여 변호인의 사전 요청으로 변론하는 ‘변론기일제’를 시행하고 (2017. 10.), 변론 투명화·공정화를 위해 의뢰인 동석변론, 非전관 출신 변호사의 지휘라인 변론 등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법정 형태의 변론실을 운영하고 있음(전주지검)</li> <li>○ 변론기일제 시행 외에도 별도의 변론실을 마련하고, 간부에 대한 변론기회도 보장함(제주지검)</li> <li>○ 소환일정 변호인 사전통지제 (2018. 8.), 기록 열람·등사 절차 개선을 통한 열람·등사 기간 단축 (2019. 2.) 직구속 영장 발부 여부 통지제(2019. 4.) 등을 통해 변호인 변론권을 적극 보장하고 있음 (제주지검)</li> </ul>
	14.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엄정하게 수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지침에 따라 성폭력 및 장애인 조사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전담 검사가 초동 수사지휘부터 공소 유지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조치하였음(광주지검)</li> <li>○ 미성년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고, 죄질이 중한 성범죄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하는 등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광주지검)</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15. 국가 배상을 심의 함에 있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세밀한 기준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심의 기준을 별도 마련하여 시행 중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 노유, 인지 및 회피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과실상계 등 국가 배상액 산정에 반영하고 있음 (광주고검)</li> </ul> </li> </ul>
대구고검 대구지검	1.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상해사건, 청소년·학생 폭행사건에 대하여 엄정하게 수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 11.~12. 대구지검에 송치된 음주운전 사건을 집중 검토한 후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4명을 직구속하고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배하는 등 엄정 대응하였고, 2019. 3. 4.부터 ‘교통전담 수사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전문 수사관을 양성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상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임</li> <li>○ 2019. 2. 28. 언론보도된 대구 동성로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에 대해 피의자 7명 중 죄질이 중한 1명을 구속기소, 나머지 피의자는 불구속기소하여 엄정 조치한 것을 비롯하여 대검 소년사건 처리 지침에 따라 향후에도 청소년·학생 폭행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임(대구지검)</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구고검 대구지검	2. 법무·검찰 산하 여성 직원에 대한 성범죄와 검찰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감사 등 사후처리에 내실을 기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공무원 징계양정기준보다 강화된 검찰공무원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하고 징계·인사조치 후에도 감찰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여 지속적으로 복무상황을 점검하고 있음</li> <li>○ 향후 철저한 자체 예방 감찰활동을 통해 구조적 비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비위발생을 방지할 예정임</li> <li>○ 「대구고등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예방 및 처리지침」(2019. 2. 27.), 「대구지방검찰청 성희롱·성폭행·성차별행위 예방 및 처리지침」(2019. 2. 27.)을 제정·시행하고 있고, 관련 고충이 제기된 경우 양성평등센터를 통하여 조사 및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등 성범죄의 예방과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임(대구지검)</li> </ul>
	3. 노조법 관련 사건을 전문성을 가지고 수사 할 수 있는 노동전담 부서 신설을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지검 공안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속 검사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안부장 주재로 공안부 평검사 전원이 매주 수요일 노동관련 법령 스터디 실시</li> <li>- 부장검사와 수석검사가 불법파견 TF에 참여하고 관련 서적 집필</li> <li>- 공안부 평검사들은 대검 노동·집단·산업안전 커뮤니티에 적극 참여 중</li> </ul> </li> <li>○ 공안부 검사 전문성 제고를 통해 관련 사건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구고검 대구지검	4. 피의사실 공표 금지, 심야 수사 금지, 포토 라인 금지 등 법무부 장관의 지침을 적극 이행할 것	○ 「인권보호수사준칙」 및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의 철저한 준수를 위해 전직원에 대한 대면교육을 반기 1회 실시하고 있고, 위 준칙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임(대구지검)
	5.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영상녹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영상녹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영상녹화를 실시하고 있음 ○ 그 결과 2018년 하반기 영상녹화 실적이 상반기에 비해 1.4배 향상 되었고, 지속적으로 영상녹화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임(대구지검)
	6. 중앙지검에서 일하고 있는 고검, 지검 소속 검사를 복귀시켜 미제 사건수를 줄일 것	○ 대구지검 일부 검사가 파견 중이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업무 지원,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 업무지원 등 수사가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당장 복귀는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음 - 이에 대구지검은 ①쟁점이 복잡한 형사부 사건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17. 8. 신설)에 배당, ②검사직무 대리 사건 배당 확대, ③소환수사 외 다양한 조사방법 활용, ④매주부장검사 이상 간부에게 장기미제 현황을 배포하여 지휘부의 관심 독려 등을 통해 미제 사건 수 감소를 도모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검사들의 업무 부담이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부산고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p>1.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상해사건, 청소년·학생 폭행사건에 대하여 엄정하게 수사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상해 사건의 구형을 1등급 상향하고, 구형의 2/3이하로 선고된 사건은 예외 없이 항소하는 자체 방침을 수립하였으며, 대검에 구형 기준 재정립을 건의하였음(부산지검)</li> <li>○ 음주운전 재판에 장기간 불출석 하는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해 특별 검거팀을 발족하여 3명을 검거(5명 추적 중)하였음(부산지검)</li> <li>○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판결 사례를 분석하여 경찰에게 전달하고, 방조범 입건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지휘하였음(부산지검)</li> <li>○ 「부산지검 음주운전 사건 처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을 시행하여 음주운전 사건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음(부산지검)</li> </ul> <p>* 국정감사 이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반복적인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19. 3.까지 5명 구속(부산지검)</p>
	<p>2. 범무·검찰 산하 여성 직원에 대한 성범죄와 검찰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감사 등 사후처리에 내실을 기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직 수사관과 오락실 업주의 유착관계에 대한 진정 접수 후 신속히 수사하여, 245억 원 상당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을 밝혀내 직위를 해제하고 구속하는 등 검찰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음(부산지검)</li> </ul>
	<p>3. 노조법 관련 사건을 전문성을 가지고 수사 할 수 있는 노동전담 부서 신설을 검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안 업무 조정과 관련하여 법무부, 대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울산지검)</li> <li>○ 현재 공안부 등에서 노동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 중임</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부산고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4. 피의사실 공표 금지, 심야 수사 금지, 포토라인 금지 등 법무부장관의 지침을 적극 이행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야조사는 피조사자 및 변호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심야조사절차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심야조사를 최소화하고 있음(부산지검)</li> <li>○ 피의사실공표죄 관련 사례 및 연구자료 등을 분석하여 구체적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하여 검사장, 차장 검사 등 9명이 격주로 발표 및 토론하는 피의사실공표 연구 모임을 활발히 진행하였음('18. 8. 22.~'19. 1. 9.)(울산지검)</li> <li>○ 또한, 울산지방경찰청 등 수사관서에 피의사실공표 행위 자체를 요청하고, 수사결과 등을 발표하는 것이 피의사실공표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함('18. 12.)(울산지검)</li> <li>○ 심야 조사는 가급적 자체하고 부득이한 심야조사 시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인권 보호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음(울산지검)</li> <li>○ 향후에도 피의사실 공표 금지, 심야 수사 금지, 포토라인 금지 등 법무부장관의 지침을 적극 이행 할 예정임(울산지검)</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부산고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p>5.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영상녹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필요한 대기 감소 등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피의자 조사 시 영상녹화를 필수화 하는 내용의 「인권친화적 조사 업무지침」을 수립하여 시행 중임(부산지검)</li> <li>○ 영상녹화조사실 4개를 추가 설치하고 영상녹화조사실 위주로 검사실을 재배치하여 모든 검사실에서 영상녹화 조사가 가능하도록 조치함(부산지검)</li> <li>○ 검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영상녹화 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하였음(창원지검)</li> <li>○ 영상녹화 실적은 2018. 6. 검사 1인당 0.5명에서 2018. 12. 5.71명으로 11배 이상 증가하였음(창원지검)</li> </ul>
	<p>6. 중앙지검에서 일하고 있는 고검, 지검 소속 검사를 복귀시켜 미제 사건수를 줄일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산지검의 경우, 중앙지검에 파견된 검사 3명 중 2명이 복귀하여 현재 파견 인원 1명임</li> <li>○ 참고로 창원지검의 경우, 미제감소에 노력을 기울여 2018. 7. 기준 1,704건, 장기미제는 169건이었으나, 2018. 12. 기준 746건, 장기미제 38건으로 감소하였음</li> <li>○ 중앙지검 현안사건이 마무리되면 파견검사 복귀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사료됨</li> </ul>

### 3. 2018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 처리결과(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

#### 법무공단·IOM이민정책연구원)

구분	시정 · 처리요구사항	시정 ·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한법률 구조공단	<p>1.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이기만 하면 법률 구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5~60%가 이에 해당되므로, 법률서비스 취약계층이 더욱 실효적으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은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에 대하여 유료로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무료로 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음</li> <li>○ 향후 중위소득 기준을 조정하는 등 유료대상자를 법률구조 대상에서 점차 제외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법률구조 사업에 집중할 방침임</li> <li>○ 앞으로도 법무부는 공단이 취약계층에 대하여 더욱 실효적인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li> </ul>
대한법률 구조공단	<p>2. 변호사에게 지급된 ‘소송성과급’과 일반직 직군에게 지급된 ‘성과상여급’의 현저한 차이, 기관장 보직은 소속 변호사만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제규칙 등은 직렬 간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 개정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부는 일반직과 변호사 사이의 성과급 차이가 완화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변호사 성과급이 사건 처리실적 등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지표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성과급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li> <li>○ 한편, 공단의 법률구조 사업은 소송 대리를 포함한 법률사무가 중심이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기관장으로</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보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적절하다고 보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부는 직렬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임</li> </ul>												
대한법률 구조공단	3.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청년 변호사들을 모두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에 관하여 다시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변호사들을 모두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바 없음</li> <li>○ 공단은 소속변호사를 임기제로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한 바 있으며, 신규 변호사의 일정 비율을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변호사로 채용하기로 변호사 노조와 합의하였음.</li> </ul>												
정부법무 공단	4. 정부법무공단의 수임 사건 수는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증가하여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단은 고객 및 업무범위 제한과 국가예산을 고려하여 법률서비스를 저렴하게 지원해야 하는 공익성으로 인하여, 수임료 인상을 통한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p style="margin-left: 2em;">※ 소송사건 평균착수금은 340만원, 법률자문사건 (고문료 포함)은 37만원에 불과</p> </li> <li>○ 국고보조금의 계속적인 감축에도 전문성 있고 충실한 법률서비스 제공에 노력함으로써 '18년 157백만원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p style="margin-left: 2em;">※ 국고보조금 '11년 10억원 → '18년 4.1억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thead> <tr> <th>연도</th> <th>'14</th> <th>'15</th> <th>'16</th> <th>'17</th> <th>'18</th> </tr> </thead> <tbody> <tr> <td>당기순손익 (백만원)</td> <td>833</td> <td>1,083</td> <td>491</td> <td>△224</td> <td>157</td> </tr> </tbody> </table> </li> </ul>	연도	'14	'15	'16	'17	'18	당기순손익 (백만원)	833	1,083	491	△224	157
연도	'14	'15	'16	'17	'18									
당기순손익 (백만원)	833	1,083	491	△224	157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성 강화와 재정 건전성 확보가 모순되는 측면도 있으나, 앞으로, 전문성 강화, 적극적인 수임활동을 통해 거래고객을 확보하고 수임 확대에 노력함으로써 재정건전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li> </ul>
IOM이민정책연구원	<p>5. IOM이민정책연구원은 제주도 무사증 제도가 원래 취지와 달리 난민 신청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는 현안과 관련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국회 상임위에 제출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제주도 무사증 제도에 대한 연구를 계획하여 '19년도 연구과제로 「무사증 입국제도의 현황과 과제: 해외사례의 시사점을 중심으로」를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제주도 무사증 제도의 긍정·부정 효과 분석</li> <li>- 국내 제도와 해외 사례를 비교하여 문제점 보완 및 향후 제도 운영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li> </ul> </li> <li>○ 향후 연구가 완료될 경우 연구결과를 국회로 제출하겠습니다</li> </ul>